

## 朝鮮末期 濟州島의 流配人과 刑事制度

洪 淳 晚\*

### I. 濟州島의 歷史的 意味

일찍부터 제주도는 많은 의미를 지닌 섬이라고 생각된다.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다고 하여 三多의 風土를 지니고 있다.

거지가 없고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어서 三無의 傳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도 內陸라는 다른 많은 문화를 지닌 섬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제주문화를 있게 한 이면에는 이와같이 자연적인 많은 작용과 요인이 있었던게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流配의 섬이었다는 사실을 빼 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그 많은 유배일들의 사상과 생활과 문화가 없는 섬이었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제주문화가 성립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제주도에 流配制度를 도입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라기 보다는 외부세력에 의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三別抄를 친압하고 제주도를 점거했던 元의 時代부터 비롯되었다. 1317년 元帝는 魏王 阿木哥를 제주도로 유배시킨 것을 비롯하여 1322년에는 微政院使 羅源을, 1340년에는 粟蘭奚大王을 각각 제주도로 귀양보냈다. 그 밖에도 170명에 달하는 많은 죄인을 제주도에 유배시켰다.

元이 멸망한 뒤에는 明나라도 같은 방법을 도입했다. 1382년에는 靈南의伯伯太子와 그 가족을, 1388년에는 元의 達達親王과 그 밖의 80여가구를,

\* 제주도사 연구가

1392년에는 梁王 차손들을 각각 제주도에 유배 시켰다.

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高麗가 이 刑罰制度를 외면할리가 없었다. 이리하여 忠惠王때부터는 제주도가 드디어 고려의 유배지로 등장하게 되었다.

1343년 麻仙을 비롯하여 趙得球, 任君輔, 金鏞, 權恒, 釋器 등이 전후하여 각각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고려때의 유배인은 수적으로 볼 때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그 영향도 커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대의 島配地로 인식되고 정착하게 된 것은 朝鮮時代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士禍가 일어나기 시작한 燕山君朝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그동안 제주도를 가리켜 「流謫一番地」라고 표현해 온 터이지만 이들 流配人 가운데는 士禍를 비롯하여 政治사건에 휘말린 역사적 인물들과 당대의 穎學, 文人们이 많았던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다음에 그 저명한 인물들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朝鮮時代 哲宗期까지)

閔無咎, 閔無疾, 金舜孫, 洪裕孫, 柳軒 洪常, 李世蕃, 金淨, 李忠緯, 普雨 李弘老, 宋象仁, 鄭蘊, 延興府夫人(仁穆大妃모친), 李濱, 申翊聖, 趙灝, 李健(海原君), 李億(海安君), 光海君, 李佶(海平君), 洪茂積, 李石鐵(慶善君) 3兄弟 李敬輿, 申得淵, 申命圭, 李焜(臨昌君)兄弟, 柳赫然, 宋時烈, 金鎮龜, 張希載, 閔黯, 吳始復, 金春澤, 李健命, 申鉉, 柳星樞, 李顯章, 尹志, 李貞儒, 任徵夏, 趙觀彬, 金聖鐸, 李奎采, 李增(驢川君), 李存中, 趙英順, 沈來復, 申思運, 韓光肇, 徐志修, 宋文載, 任觀周, 尹塾, 李祔(恩彥君)兄弟, 趙貞喆, 丁蘭珠, 洪樂任, 金正喜, 李明燁(數應), 白樂莘, 金始淵, 李夏銓.

## II. 朝鮮時代의 刑罰制度와 流刑의 變遷

여기서 잠깐 朝鮮時代의 刑罰制度를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朝鮮時代의 刑罰制度를 보면 中國의 法律인 大明律을 그 基本法으로 하여 시행해 왔으며 그 法典도 朝鮮초기의 經國大典으로부터 말기의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정리작업을 거치면서 운용돼 온 것을 알 수 있다.

刑典을 보면 조선시대의 刑罰은 正刑, 流刑, 徒刑, 杖刑, 答刑의 五刑制가 채택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流刑은 最高刑 다음에 채택되었던 중간 형벌제도임을 알 수 있다.

笞刑은 10度에서 50度, 杖刑은 60度에서 100度까지 각각 5등급이 있었고 徒刑은 1년에서부터 각각 6개월 차등을 두어 3년까지 5등급이 있었다. 死刑에는 주로 紋首刑과 斬刑이 채택되었는데 凌遲處死, 案示, 売市 등의 加重刑이 부가되기도 했으며 王족이나 功臣, 大臣들에게는 賜死등 특별예우형이 내리기도 했다.

流刑은 반드시 정확한 산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2千里, 2千 5百里, 3千里 등 3등급이 있었으며 遷徙, 付處, 定配, 安置, 圈籬安置 등으로 구분 시행했다. 流配地는 주로 奧遠地配와 島配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遠地配의 경우는 교통과 생활이 불편한 遠惡地가 島配의 경우는 배길이 험한 제주도를 비롯한 全羅, 慶尚道의 약 20개 섬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遠惡地, 遠惡島라 할지라도 官守가 없는 곳에는 죄인을配置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大典會通을 보면 濟州三邑은 「罪名의 特重한 자이외에는 定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형인 가운데서도 중죄인을 귀양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流刑制度는 조선시대 근 5백년동안 遠近法에 의해 운용돼 왔으나 1895년 甲午更張에 따른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刑期制로 바꾸어 長短法이 도입 되었으며, 처음에는 10년, 15년, 終身의 등급이 3등급이었으나 나중(1896년)에는 1년에서 終身까지의 10등급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流刑制度는 1909년에 이르러 완전히 폐지되고 禁錮刑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1907년에 到配되었던 朴泳孝나 1911년에 도배되었던 李昇薰등은 바로 이 禁錮刑을 받고 내도했던 것이다.

### III. 朝鮮時代 末期의 流配人

1863년 말 高宗이 등극하고 그 生父 大院君이 집정하면서 부터 1910년 日

帝의 강권에 의해 합併이 될 때 까지는 비록 36년의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격변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찌기 중국만을 섬기며 나라 밖의 사정을 몰랐던 은둔의 나라 조선왕국에 日本을 비롯하여 美國, 英國, 프랑스, 獨逸, 러시아등 烈強이 뒤를 이어 물아닥치고 새 사상과 문화가 밀려와 開國과 斥邪의 分裂이 일어나고 守舊 세력과 獨立協會의 對立이 극도에 달하여 政局은 混迷속에 빠지고 朝廷은 정신을 가누지 못했다. 그러면서 戰爭과 난리, 紛爭과 暗鬭는 끄칠 줄을 몰랐다.

그런 가운데 이 시기에 流配되었던 인물들도 60여명에 달하여 그 어느 시대에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많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당파양상 또한 복잡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그 人物 시기 죄명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864년(高宗 1) 沈履澤(吏曹·禮曹判書)=貪饕不法罪, 貝星喜(成均館典籍)=科試不正.

1870년(高宗 7) 鄭晚植=李弼濟 逆謀事件.

1873년(高宗 10) 崔益鉉(戶曹參判)=凶疏不道罪.

1875년(高宗 12) 金復性(兵曹參議)=科試不正.

1876년(13) 趙秉昌(吏曹·禮曹判書)=朝廷嘲謔, 鄭泰好(吏曹·禮曹判書)=貪饕不法罪.

1879년(高宗 16) 李禱蕙, 南廷皓(弘文館副修撰), 朴泳薰(濟州察理使), 閔泳序(承政院注書)=이상 科試不正.

1881년(高宗 18) 李泰鉉(咸鏡兵使)=貪饕虧斂罪.

1882년(高宗 19) 白樂寬=叛上不道罪. 尹相和(忠翊將)=疏辭不道罪.

1883년(高宗 20) 全東赫(永平郡守)=行悖犯越.

1890년(高宗 27) 朴永駒(中樞院議官), 鄭錫五(副正學), 趙鍾龍, 高永中(承文院正字)=이상 庭試冒稱.

1893년(高宗 30) 安孝濟(弘文館修撰)=疏辭不道.

1895년(高宗 32) 韓祈錫, 金國善, 林璣洙, 許燁, 金明鑑, 張德鉉, 崔亨淳=이상 李俊鎔逆謀事件. 李敏宏(軍部砲兵局長), 李忠求(警務使, 慶尚監司), 全佑基(元帥府檢查局長), 盧興奎=이상 王妃弑害復讐企圖事件.

1896년(建陽 1), 徐周輔(宮內府參事官, 秘書院丞), 鄭丙朝(宮內府侍從官), 金經夏(漢城府觀察使), 李台璜(鎮衛隊副尉), 李範疇(宮內府侍從), 洪祐德(高陽郡守) = 이 상 乙未事變과 동 10월 詛獄. 鄭元老, 林允吉, 安寬鉉=度支部大臣 魚允中 殺害事件.

1897년(光武 1), 韓善會(中樞院參事官), 張允善(司憲府監察) 金思燦, 李容鎭(弘文館校理), 李根澤(軍部大臣), 金洛榮(義禁府都事) = 이 상 李彰烈·金洛榮事件. 金允植(外務大臣 中樞院議長), 李承五(奎章院卿, 吏曹, 禮曹判書) = 이 상 乙未事變連坐.

1898년(光武 2) 李世植(法部刑事局長, 高等裁判所檢事) = 韓善會등 獄事不正. 朴明煥(副看役) = 洪陵石儀不正.

1899년(光武 3) 金必濟, 尹濟普 = 이 상 景福宮 選御謀議事件.

1901년(光武 5) 吉永洙(漢城府判尹, 元帥府軍務局長)

1907년(隆熙 1) 朴泳孝(內務, 宮內府大臣) = 大臣暗殺謀議事件.

1911년 李昇薰(五山學校理事長, 東亞日報社長) = 北間島武官學校事件.

이상에서 조선시대 말의 저명한 유배인을 들어 보았지만 그 죄목을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政治的 사건으로 18건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이 科試不正으로 10건, 세번째가 謀反 사건과 王妃弑害 사건연루자로 각각 8건에 이르고 있다. 그 밖에 貪饕不法 및 不正罪로 5건, 疏辭不道罪가 4건 기타 2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죄목이 示峻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때의 유배인은 科試不正과 탐도 부정등 약간의 부정사건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정치적 사건과 관련하여 유배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이 때의 특징으로는 鄭晚植, 趙秉昌, 安孝濟, 吉永洙 등 몇몇 사람이 추자도에 유배된 것을 볼 수 있으나 거의가 濟州牧에 집중 定配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 이전의 관례를 보면 濟州유배인은 濟州, 旌義, 大靜의 三邑에 대체로 분산 付處된 것이 보통이었으나 조선 말기에는 예외였다고 할수 있다

#### IV. 그들이 남기고 간 것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처럼 많은 정치범들이 근대로 접어드

는 우리나라 역사의 한 전환기에 제주도에 謫居해 있었다는 사실이며 더구나 이들 가운데 적잖은 인물들이 당시 우리 나라의 역사를 이끌던 主役들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 가운데서도 大院君執政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수만어에 달하는 上疏로 時政을 彙該하므로서 大院君 10年牙城을 무너뜨린 先烽將 崔益鉉의 도배, 그는 귀양에서 풀려 돌아간 다음에는 戾邪衛正論의 巨頭로 日本을 비롯한 外勢의 侵略과 맞서 싸우다가 마침내 日警에 의해서 拘禁되어 對馬島의 감옥에서 파란의 일생을 마친 인물이었다.

房星七의 난, 天主敎의 난등 民亂이 거듭되던 제주도에 귀양와서 이들 난리를 직접 지켜보았던 金允植은 조선시대 말의 우리나라 큰 사건에 거의 관련했던 인물이었다. 壬午軍亂이 일어났을 때는 閔妃와 高宗의 密令을 받아 清軍을 동원 난을 진압하고 大院君을 몰아냈으며 甲申政變이 일어났을 때도 袁世凱를 움직여 清軍을 개입시켜 日軍을 몰아냄으로써 이를 실패로 돌아가게 했고 또 甲午更張때는 外務大臣으로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 밖에도 당대의 많은 정치적 사건에 직접 간접으로 간여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開化獨立黨의 領袖 朴泳孝를 빼 놓을 수가 없다. 그는 항상 힘을 바탕으로 甲申政變을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의 近代化를 혁명수단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을 여러 정치사건과 관련하여 평안한 날이 없었고 22년의 긴 세월을 亡命생활로 보낸 불운의 정치인이기도 했다. 甲午更張 후에는 內務大臣으로 정치개혁에 참여했고 海牙密使사건후 日帝의 강압에 의한 高宗의 선위때는 宮內府大臣으로 이를 반대 저지하려다가 마침내 제주도에 감금되었던 인물이다.

勉庵 崔益鉉의 謫居는 1873년(高宗 10) 11월에 입도하여 1875년 3월에 떠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濟州城內 七星路 尹奎煥의 집에 謫所를 마련하고 제주도의 선비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橋岩李基溫 등 여러 선비가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유명한 「漢拏山記」를 비롯하여 韓叢의 碑記 등 많은 글을 쓰기도 했고 漢拏山 白鹿潭과 訪仙門등에는 磨崖刻등 유적을 남기기도 했다.

雲養 金允植은 1897년(光武 1) 12월에 입도하여 1901년 7월 智島로 移配될 때까지 濟州城內校洞(觀德路) 金膺斌判官 데에 講所를 마련하고 5년을 이곳에서 귀양살이로 보냈다. 그는 「雲養集」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日本의 學士院賞을 받을 만큼 뛰어난 文章力を 지닌 사람이었다. 이때는 또 유배인들 가운데 三穩 李承五, 養泉 徐周輔, 廉園 鄭丙朝, 塘雲 韓善會, 我石 李容鎬, 繡山 金思燦 등 많은 文人 등이 講居해 있을 때였으므로 이들과 제주도의 文人們과 어우러 詩會橘園을 창립하고 거의 매일 같이 詩會를 열어 문학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매일 日誌를 기술하였는데 그 뒤 이것이 繢陰晴史로 간행되어 天主教亂을 비롯한 제주도의 한 시대의 激變史를 누구의 證言보다도 가장 정확한 歷史資料로 남겨 주기도 했다.

玄玄居士 朴泳孝. 그는 1907년(隆熙 1) 7월에 제주도에 들어와 合邦이 되던 1910년 6월에 떠났다. 그는 처음 濟州城內山底洞(七星路)에 있다가 얼마 뒤 濟州南城밖 독지골(九男洞)에 2만4청여영의 넓은 땅을 매입하여 이 곳에서 과수와 원예를 품소 재배하면서 지냈다. 이처럼 그가 손수 원예를 실천에 옮긴 것은 日本亡命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소득이 낮은 단순농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래농업 양식에 혁혁을 일으켜보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도에 적거하는 동안 그는 그를 따라 모이던 많은 청소년들에게 근대 사상을 전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잔치를 베풀어 多衆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기도 했으며 여러가지 계동활동과 운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제주도에서 많은 청년들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았던 그는 1년간의 짐금 형에서 풀려난 다음에도 제주도에서의 활동을 위해서 2년이나 더 체류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저명한 정치가, 사상가, 종교가, 학자들의 활동이 있었고 그 영향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지만 시간제약으로 여기서는 더 언급할 수가 없다.

제주도의 문화형성과정에 있어서 유배인들의 미친 영향은 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특히 근대문화사상에 미친 이들의 공헌은 더욱 커다고 하겠다. 이 시대에 있어서 그들의 적거와 활동으로 제주도가 받아들인 문화사적 영향은 ① 격변전환과정에 있던 中央思潮의 신속한 受容, ② 近代思想과 문화의 도입, ③ 새 國家觀, 새 世界觀의 인식, ④ 새 生活觀의 자각, ⑤ 새로운 產業에의 도전, ⑥ 藝術文化의 향상과 촉진, ⑦ 새로운 세계에의 진출 기운동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오늘날 濟州人们이 두드러진 教育熱과 海外進出 새로운 문화에의 접촉과 개척사상 내륙지방과 견주어 비교적 빠른近代化過程 등을 바로 이들에 의한 공헌에 힘 입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